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8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김승수·김상훈·엄태영

김기현 • 박성민 • 최보윤

강명구 • 이인선 • 최수진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

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
	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
	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